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
------------	---

제안년월일 : 2006년 7월 14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「교육사회위원회」 소관사무 중 교육청 업무의 증가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기획행정 위원회는 8인을 7인으로, 교육사회위원회는 7인을 8인으로 함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(위원회의 설치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8인
2. 기획행정위원회 7인
3. 교육사회위원회 8인
4. 산업경제위원회 7인
5. 관광건설위원회 8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획행정위원회 8인</p> <p>3. 교육사회위원회 7인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기획행정위원회 7인</p> <p>3. 교육사회위원회 8인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0조 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 <개정 1991.12.31, 2006.4.28>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<개정 1991.12.31>